

**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**  
**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의안 번호	관련 55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22일  
제안자 : 교 통 위 원 장

### 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용어가 서로 달라 이를 정리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“수소 연료전지자동차”를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정의에 따라 “수소전기자동차”로 수정함(제3조제2항제6호)

#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,  
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의원발의안)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제3조(재정지원 대상)	제3조(재정지원 대상)	제3조(재정지원 대상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~ 5. (생 략)	1.~ 5. (현행과 같음)	1.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「 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</u> 」에 따른 수소 <u>연료전지자동차·전기자 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 선하는 사업</u>	6. 「 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전 <u>기자동차, 수소전기자 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</u>

#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
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 
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재정지원 대상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 5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(재정지원 대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전기자동 차, 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</p>